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98
------	------

제출일자 : 2024. 4.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협치회의 위원 수 확대와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협치회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정비
- 위원 정원 확대 및 구성 기준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 위원 구성 시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독려
조항 신설(안 제9조제5항 신설)
- 위원 임기 기준 구체화(안 제10조제2항)
- 협치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24. 3. 8.~ 2024. 3. 28.)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관협치에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4회”를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u></p> <p>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구의회에서</u> 추천하는 구의원 2명</p> <p><u><신 설></u></p> <p>3. (생략)</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u></p> <p>제9조(구성) ① ----- ----- <u>50명</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u>----- --</p> <p>3. <u>민관협치에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⑤ <u>구청장은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u></p>

제10조(임기) ① (생략)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
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
집한다.

② ~ ④ (생략)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
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
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
다.

②·③ (생략)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제13조(회의) ① -----

-- 2회 이상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

----- 5년 -----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치행정과 주민협치팀 유희진
연락처	2627 - 2203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시행 2020. 7. 17.]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08호, 2020. 7.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치사업”이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을 결정·집행·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금천구협치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천구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7.>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협치업무 담당 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7.>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심히 해한 경우
6.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
- ④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국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조직)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금천구협치추진단 또는 금천구협치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관련기관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치 정책의 발굴과 협치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 등
2. 협치의 촉진 및 구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백서 발간)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7.]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7.>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